
제59회 정기총회자료

2021. 2. 3.

K-BIZ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목 차

○ 제1호 의안	2020년도 사업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 1
○ 제2호 의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3
○ 제3호 의안	정관 개정(안)	/ 5
○ 제4호 의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제품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	/ 10
○ 제5호 의안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 제도를 위한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안)	/ 13
○ 제6호 의안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 위임의 건	/ 16
○ 제7호 의안	조합원 제명 처리의 건	/ 18
○ 제8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21

의 안 번 호	제 1 호
의 결 년 월 일	2021. 2. 3.

2020년도 사업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제 59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21. 2. 3.

2020년도 사업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1. 의결주문

별첨 『2020년도 사업보고서』를 접수하며, 2020년도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정관 제56조 및 예산회계규약 제16조에 의거 작성된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업보고

『2020년도 사업보고서』별첨

나.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2020년도 결산서안』별첨

의
결
사
항

의 안 번 호	제 2 호
의 결 년 월 일	2021. 2. 3.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 59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21. 2. 3.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1. 의결주문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정관 제23조 및 예산회계규약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편성한 2021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서』별첨

나. 수지예산

『2021년도 수지예산(안)』별첨

의
결
사
항

의 안 번 호	제 3 호
의 결 년 월 일	2021. 2. 3

정관 개정(안)

제 59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21. 2. 3.

정관 개정(안)

1. 의결주문

정관 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사유

조합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을 명문화하여 조합사업 범위를 확대 및 사업의 영역을 추가하고, 급변하는 중소기업의 환경에 맞추어 조합원의 공공구매 판로를 모색하고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협동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제22조(사업)을 추가하고,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 위임처리 사항 건을 추가하여 공동구매 및 공동사업 전용보증(원부자재 구매자금 등)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조합원을 위한 기본 자금 조달을 통하여 조합원 사업판로를 확대하고자 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제9조(조합원의 자격)

－ 업종추가

현행	개정(안)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5, 582, 620)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5, 582, 620, <u>251, 259</u>)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251(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업종 추가 제품 설명 : 붙임 참조

○ 제22조(사업)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정보통신공사사업 및 그 관련사업』 추가

현행	개정(안)
제22조(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 19. (생략)	제22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19. (현행과 같음) <u>20.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정보통신공사사업 및 그 관련사업(SI사업 등)</u>

○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사항 중 제1항 11호 차입금 한도액 항목 추가

현행	개정(안)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10. (생략) 11. 차입금 한도액 12. (생략) ①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차입금 한도액 12. (현행과 같음) ①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u>제11호</u>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정관 개정(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붙임】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8조 (생 략)	제1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 ① (생 략)	제9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5, 582, 620)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 초과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5, 582, 620, <u>251, 259</u>)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 초과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21조 (생 략)	제10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u>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정보통신공사 및 그 관련사업(SI사업 등)</u>
② 조합은 -----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은-----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 ~ 제28조 (생 략)	제22조의2 ~ 제28조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10. (생략) 11. 차입금 한도액 12. (생략) ①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 제74조 (생략)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차입금 한도액 12. (현행과 같음) ①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u>제11호</u>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 제74조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1. ~ 19 (생략) <u>〈신설〉</u>	1. ~ 19 (현행과 동일) <u>20.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이 인가한 날(0000.00.00)부터 시행한다.</u>

의 안 번 호	제 4 호
의 결 년 월 일	2021. 2.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제품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

제 59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21. 2.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제품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

1. 의결주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제품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소액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협동조합을 통하여 적정업체를 추천받고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따라서 동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물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도 횟수와 실제 계약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 하는 기준(안)을 마련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함.

- 구매대상액 :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부가세별도)이하 구매 건
-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구매대상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추천대상업체 :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3. 의결내용 : 붙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 추천 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 참조

【붙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 추천 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

(※물품별 업체당 연간 추천횟수 및 실계약 한도액)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2021년도 제품별 추천한도(안)	
	소분류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추천 횟수(회)	계약금액(억원)
정보기술방송 및 통 신 기	432218	광 네 트 워 크 장 치	4322181001	광다중화장치	6	20
	432226	네트워크서비스장비	4322269601	동보장치	6	20
			4322269602	마을무선방송장치	6	20
	432228	전 화 장 비	4322281805	통합배선반	11	20
			4322289701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6	20
	432215	콜매니지먼트시스템 또는 액세서리	4322150101	자동안내장치	6	20

의 안 번 호	제 5 호
의 결 년 월 일	2021. 2. 3.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위한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안)

제 59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21. 2. 3.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위한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안)

1. 의결주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위한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하여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도록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물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추천횟수 및 연간 계약한도기준(안)을 마련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함.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 구매대상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추천대상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소기업체

3. 의결내용 : 붙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 제도를 위한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기준(안)』 참조

【붙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기준(안)

(※물품별 업체당 연간 추천횟수)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2021년도 제품별 추천한도(안)	
	소분류	제품명	세부분명번호	세부분명	연간 추천 횟수(회)	연간 계약한도(억원)
정 보 기 술 방 송 및 통 신 기	432226	네트워크서비스장비	4322269601	동보장치	24	40
			4322269602	마을무선방송 장치	24	40
	432228	전 화 장 비	4322281805	통합배선반	24	40
			4322289701	주파수분할다 중화장치	24	40

의
결
사
항

의 안 번 호	제 6 호
의 결 년 월 일	2021. 2. 3.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 위임의 건

제 59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21. 2. 3.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 위임의 건

1. 의결주문

총회 의결사항 중 이사회 위임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정관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 의결사항 중 이사회에 위임 가능한 아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권한을 위임 하고자 함.

3. 의결내용 :

정관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 의결사항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함.

- 매 사업연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제3호)
-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제5호)
-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제10호)
-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호)

의
결
사
항

의 안 번 호	제 7 호
의 결 년 월 일	2021. 2. 3.

조합원 제명 처리의 건

제 59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21. 2. 3.

조합원 제명 처리의 건

1. 의결주문

조합원 제명 처리의 건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장기간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조합 제경비인 조합비를 장기 미납한 업체로 조합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업체에 대하여 정관 제16조에 의거 총회 의결을 득하여 2020년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제명처리 하고자 제안함.

3. 제안근거

- 정관 제16조, 제29조, 제37조
- 조합원자격기준규정 제14조

4. 제명대상업체명단 : ‘붙임’ 참조

【붙임】

제 명 대 상 업 체 명 단

순번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회비미납 금 액	기 간	비고
1	(주)금산트리피아	106-81-60552	김백순	5,700,000	2011.3/4~2020.4/4	
2	(주)남곡상사	120-81-16498	이상곤	7,530,000	2006.3/4~2020.4/4	
3	에이스티엔에스(주)	139-81-30607	이상구	9,360,000	2002.4/4~2020.4/4	
4	(주)에이치아이씨네트웍스	105-81-71380	조태환	3,750,000	2013.3/4~2019.3/4	
5	(주)엠에이티	138-81-11043	김영준	5,400,000	2012.1/4~2020.4/4	
6	(주)하이게인안테나	134-81-05200	이승호	9,540,000	2003.1/4~2020.4/4	
7	(주)한성아이넷	621-81-32443	강원수	7,920,000	2007.3/4~2020.4/4	
합 계				49,200,000		

의
결
사
항

의 안 번 호	제 8 호
의 결 년 월 일	2021. 2. 3.

임원 선출의 건

제 59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21. 2. 3.

임원 선출의 건

1. 의결주문

정관 제41조 1항에 의거 임원선출의 건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2021년 2월 10일로 임기 만료되는 임원을 제59회 정기총회(2021. 2. 3)에서 선출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정관 제37조, 제41조, 제45조
- 임원선거규정 제4조

4. 결의요지(안)

- 이사장 1인
- 이 사 (5인 이상 ~ 13인 이내)
- 감 사 (2인 이내)

5. 결의요지

조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4항의 임원 선출(안) 결의를 요망함